

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2. 25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2. 2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6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에서 보류되었던 안전에 대하여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김지남)

가. 제안이유

- 작은정부의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
- 우리 시에서는 제1단계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
 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
 -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(1999. 2. 18 조례 제1628호 제정)에 의거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명칭 :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
- 위치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
- 규모
 - 하수처리시설 : 1일 60만 톤 시설
 - 분뇨처리시설 : 1일 500톤 시설
 - 차집관로시설 : 25km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

의안번호	제 112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2. 2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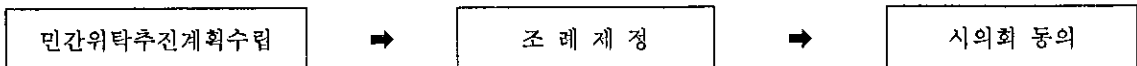
□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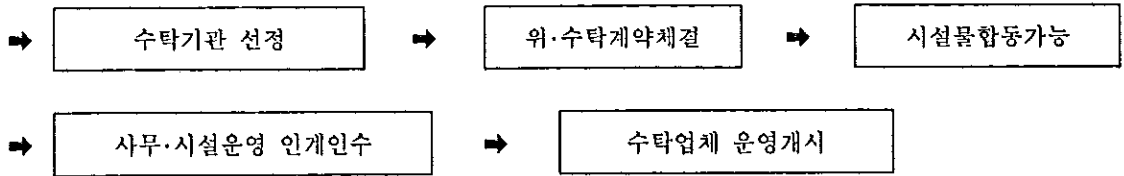
- 작은정부의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
- 우리 시에서는 제1단계로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
 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
 -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③항 규정(1999. 2. 18조례 제1628호 제정)에 의거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위탁시설 내용

- 명칭 :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
- 위치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
- 규모
 - 하수처리시설 : 1일 60만 톤 시설
 - 분뇨처리시설 : 1일 500톤 시설
 - 차집판로시설 : 25km

□ 위탁업무 추진체계





□ 위탁방법

- 민간위탁 적정운영 유지관리비 산정 - 전문기관 용역발주
-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
-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의 선정
 - 재정부담능력, 시설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검토 후 선정

□ 불입 :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1부

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

I. 추진배경

-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부문 영역을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 → 작지만 강력한 「작은정부 실현」
- 신규 및 기존시설에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,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 → 생산원가의 절감, 비효율 부문의 효율성 제고, 민간부문의 강화, 규모의 경제성 확보

II. 근거 및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, 검사, 감정,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 -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감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III. 민간위탁 추진방향

1. 단계별 위탁추진

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를 파악·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우선 제1단계로 「하수정화사업소」를 민간위탁

가. 제1단계 :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

- 「환경기초시설민영화업무처리지침(97. 2월 환경부)」 및 하수도시설업무일반지침(97. 3월 환경부)에 의거 하수시설의 민간위탁 타당성이 기이 입증되었음.
- 광주광역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실시(97. 12. 18 금호) : 600천 톤/일
- 경기도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실시(98. 5. 19 (주)올트라환경 외 1개 업체)
- 경기도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11개소(하수종말처리장 6, 간이오수처리장 3, 축산폐수처리장 1, 분뇨처리장 1개소) 민간위탁실시(98. 8월) : 4,790m³/일
- 하수시설의 민영화계획검토 추진촉구
 - 경기도 하수 67712-1340(97. 6. 17), 경기도 상하 67712-2007(98. 7. 30)
 -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 시달(99. 1. 9 경기도)

나. 제2단계 : 기타 사업(업무)의 민간위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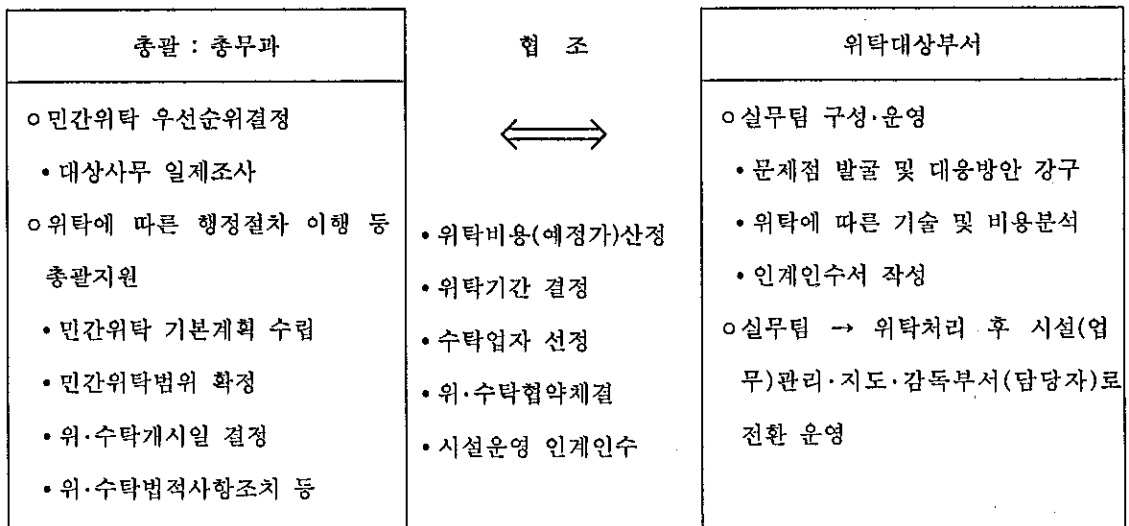
- 민간위탁 가능 대상사무를 일제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추진

총무과

2. 위탁업무추진 협조체계 유지

위탁대상 순위에 따라 업무 협조체계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

- 위탁업무 추진총괄 : 총무과
- 위탁대상 부서 : 실무팀 구성운영(기술 및 비용분석)
- 총무과 : 위탁에 따른 인력조정문제 협조지원



IV.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

1. 현황

가. 규모 및 주요시설

○ 하수처리시설

- 위치 :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
- 부지면적 : 327,126㎡(112,568평)
- 처리용량 : 105만 톤/일 계획
 - ┌ 1단계 : 60만 톤/일(91.~99년, 부천 32만 톤, 인천 28만 톤)
 - ├ 2단계 : 30만 톤/일(99.~2006년)
 - └ 3단계 : 15만 톤/일(2007~2010년)

○ 분뇨처리시설 : 1일 500톤 시설

○ 차집관료시설 : 25km

※ 98. 12월말 현재 공정

- 1단계 1차 15만 톤/일 공사 준공(95. 6. 30)
- 1단계 2차 45만 톤/일 공사 진행 중(99. 12월 준공예정)
 - ┌ 사업비 235,406백만원
 - └ 시공자 : (주)대우, 감리자 : (주)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
- 처리방법 : 표준환성슬러지법(2차 처리)

○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투자현황(계획)

구 분	계 획	1단계	2단계	3단계	비 고
기 간	91.~2010	91.~99.	99.~2006	2007~2010	
용 량	105만 톤/일	60만 톤/일	30만 톤/일	15만 톤/일	
사업비	5,124억원	2,354억원	1,900억원	870억원	

나. 인원 : 70명(99. 2. 5 현재)

계	일 반 직						기능	청원 경찰	일용
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			
70	16	1	3	8	2	2	37	9	8

다. 연도별 하수처리 운영 예산내역

(단위 : 원)

96.예산 집행액	97.예산 집행액	98.예산 집행액	99.예산액
3,407,239,460	4,539,531,260	5,029,557,870	6,280,788,000

※ 세부사항 : "별지"

라. 시설운영

○ 98.하수처리 현황

(98. 12월말 기준)

구분	하수처리량 (톤)	탈수슬러지 생 산 량 (톤)	탈수슬러지 육상매립			탈수슬러지 해양배출		
			반출량 (톤)	운반비 (천원)	처리비 (천원)	반출량 (톤)	운반비 (천원)	처리비 (천원)
합 계	123,403,060	45,372	18,807	143,824	394,204	26,565	192,199	422,386
월평균	10,283,588	3,781	1,567	11,985	32,850	2,214	16,016	35,199
일평균	338,091	12,431	51.53	394	1,080	72.78	526	1,157

※ 슬러지처리방법 변경 : 육상매립 → 육상매립 및 해양배출(98. 6. 26일부터)

- 해양배출 : 15,900원/톤, 육상매립 : 20,960원/톤

- 해양배출운반 : 7,235원/톤, 육상매립운반 : 7,647원/톤

○ 분뇨 및 정화조 월별 반입현황

(단위 : 천톤)

월별	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계	127.7	7.0	7.6	12.2	13.2	12.2	12.1	11.4	9.8	10.6	9.3	12.0	10.3
분뇨	16.7	1.0	1.0	1.4	1.6	1.5	1.6	1.4	1.4	1.4	1.2	1.9	1.3
정화조	111	6.0	6.6	10.8	11.6	10.7	10.5	10.0	8.4	9.2	8.1	10.1	9.0

2. 추진계획

가. 추진기간 : 1998. 11~1999. 5월

※ 위탁개시 → 1999. 6. 1일(예정)

나. 추진방법

- 실무부서간 상호협조체계 유지 및 책임 수행
 - 정책기획실 : 기본방침(계획)수립·결정, 위탁관련조례제정, 위·수탁 협약체결, 인수인계 참여
 - 총무과 : 위·수탁에 따른 인력조정 및 관리
 - 하수과 : 위·수탁에 따른 기술분야 지원

하수정화사업소 「민간위탁추진팀」 구성·운영

- 운영기간 : 98. 11. 16~위탁업무 종료시까지
- 인력 : 4명
 - 행정6급(1), 행정8급(1), 기계7급(1), 화공7급(1)
- 기능
 - 하수정화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실무사항 추진 및 지원
- ※ 위탁완료 후 하수정화사업소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은 하수과에서 운영
- 운영 : 현소속부서(합동작업 필요시 별도 사무실에서 업무추진)
- 추진방법 : 소속본연의 업무+탐업무를 추진하되 탐업무에 비중을 두어 추진

다. 민간위탁업무 세부 추진일정

- 세 부 사 항 -

민간위탁계획수립

1. 위탁업무 범위 결정
2. 위탁개시일

98. 11. 6



조례제정

1.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 제정

99. 2. 18



시의회 동의

1. 시의회 동의
 - 추진계획 보고

99. 3월



수탁기관 선정

99. 3월



위·수탁 협약체결

99. 4월



시설물 합동가동

99. 5월



사무·시설 인계인수

99. 5월



수탁업체 운영개시

99. 6. 1

1. 수탁기관 선정 모집공고
2.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

1. 협약안 작성
 - 수탁업무의 범위
 - 비용지급 방법
 - 책임한계

2. 협약체결
 1. 위·수탁기관 시설물 합동가동

1. 인계인수서 작성

1. 수탁업체 업무시작

3. 기대효과

- 민간부문의 전문성, 기술성 이전효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
- 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시간적·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: 시장기능의 강화도모
- 민간의 첨단처리 신기술 도입 용이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용이
- ※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(추정)

구 분	시 직영시	민간위탁운영시	절감효과
운영인력	70명	48명	△22명
운영관리비	62억원	53억원	△9억원

<별지>

연도별하수처리운영내역

(단위 : 원)

연도별	96.예산 집행액	97.예산 집행액	98.예산 집행액	99.예산액
하수처리량	1일 117천 톤	1일 200천 톤	1일 338천 톤	1일 460천 톤
총 계	3,407,239,460	4,539,531,260	5,029,557,870	6,280,788,000
인 건 비	1,798,879,180	1,921,950,700	1,784,760,480	1,790,547,000
약 품 비	39,457,270	183,930,560	135,272,670	313,900,000
동 력 비	556,899,820	948,876,130	1,517,067,400	1,912,943,000
슬러지처리비	427,840,870	809,033,720	1,170,633,520	1,740,289,000
수선유지비	402,008,780	514,209,670	304,917,160	352,796,000
연 료 비	40,638,850	11,076,160	8,579,700	44,878,000
일반관리비	135,194,890	96,591,460	93,983,070	117,435,000
자산취득비	6,319,800	8,842,060	14,343,870	8,000,000
기타(이월예산)	-	45,020,800	-	-
예산집행액/ 하수처리량(톤) =톤당 운영단가(원)	<u>3,407,239,460</u> 42,715,200 =79.77	<u>4,539,531,260</u> 72,898,500 =62.27	<u>5,029,557,870</u> 123,403,060 =40.76	<u>6,280,788,000</u> 167,900,000 =37.41